

04

보건복지·여성·법무·교육


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

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(☎ 02-202-2452)

- **의료기사 등***을 대상으로 '14.11.23 부터 **면허신고제**가 시행됨에 따라,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**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** 각 **협회 홈페이지**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
* 의료기사 등 (8개 직종) :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, 의무기록사, 안경사

- **면허신고제**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면허신고제를 통해 앞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,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.
- '15년부터는 **면허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**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**의료서비스의 질 향상**과 **대국민 신뢰도 제고**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면허신고제도 시행

2015년도 의료기사면허신고제 시행내용

- 추진배경 :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 강화
- 주요내용
 -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, 보수 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 (신고대상자: 전체 의료기사 등 약30만명)
 -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, 일괄 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 진행
- 일괄신고기간 : 2015.1.6.~11.22



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(A형간염 추가)

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(☎ 043-719-6839)

-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2015년 ‘A형간염’이 추가됩니다.
 -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‘A형간염’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.
 - * '14년 13종 백신 지원 → '15년 14종 백신지원(A형간염, 5월 추가지원 예정)
 -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~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('15.5월 시행 예정).
 - *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(<http://nip.cdc.go.kr>) 사이트에서 검색
- 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A형간염 무료접종 시행('15년 초 보도 예정)

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 항목 확대

- 2015년도 지원 백신(14종)
BCG(피내용), B형간염, DTaP(디프테리아/파상풍/백일해), IPV(폴리오), DTaP-IPV(디프테리아/파상풍/백일해/폴리오), MMR(홍역/유행성이하선염/풍진), 수두, 일본뇌염(사백신), Td(파상풍/디프테리아), Tdap(파상풍/디프테리아/백일해), Hib(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), 일본뇌염 생백신, 소아폐렴구균, A형간염('15.5. 지원예정)



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

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(☎ 043-719-6821)

-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확대됩니다.
 -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- 15년 10월경부터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·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
 - 가까운 병·의원에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 접근성이 향상됩니다.
- 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('15년 하반기 보도 예정)

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실시

- 추진배경 :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독감예방접종 실시
- 주요내용
 - ①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실시
 - ② 무료접종기관이 보건소에서 **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**되어 접근 편의성 향상
- 시행일 : '15년 10월경(백신 조달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)

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

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(☎ 043-719-7913)

-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**고등학생 1학년생**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.
 - 2014년 충남 소재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, 2015년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**확대**합니다(15.7월 시행 예정).
-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**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**합니다.
 - 그동안은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었으며, 앞으로는 **민간의료기관**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**95%까지 지원을 확대**합니다(15.7월 시행 예정).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청소년 결핵 집중관리사업으로 결핵발병예방

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및 의료비 지원 확대

- 추진배경 : 학교내 결핵발생 지속
- 주요내용
 - 고등학교 1학년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 및 보건교육
 - 잠복결핵감염자 대상 예방치료
 - ※ 검사 및 치료 동의자 대상 실시
 -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(본인부담금의 95% 까지 지원)
- 시행일 : '15년 7월경

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2-202-2734)

- 암·심장·뇌혈관·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-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, 지난 2년간 검사·시술·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.
- 2015년에는 항암제, 유전자 검사법,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·시술·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.
-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,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,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됩니다.
- 아울러,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·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.

2015년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

- 추진배경 :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
- 주요내용
 - ① '15.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
 - ② '15.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·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
 - * 현재는 입원하여 중증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산정특례 적용
 - ③ '15년 고비용 검사·시술·약제 200여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



3대 비급여 개선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44-202-2743, 2744)

■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('14.2월 발표)에 따라, **선택진료비·상급병실료·간병비 부담이 '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.**

* '14년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%감소, 4·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,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에서 제공 등 추진함

-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**현행 80%→65%로 낮추어** 원하지 않는 경우 **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** 예정입니다. ('15.8월)
-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**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%→70%까지 강화하여,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** 할 예정입니다. ('15.9월)
-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**'포괄간호서비스'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→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** 예정입니다. ('15.1월~)

※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은 www.nhis.or.kr 가능

어르신 임플란트,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(☎ 02-202-2734)

- '15.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·적용될 예정입니다.
 - 그 동안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다 2014년 7월,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(건강보험 급여화)을 시작한 바 있으며,
 - 2016년 65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
- 아울러, 2012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(75세 이상)도 70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
2015년도 어르신 임플란트, 틀니 보험급여 적용

- 추진배경 :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로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
- 주요내용
 - ① '15.7월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
 - ('15년) 70세 이상 → ('16년) 65세 이상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
 - ② 노인틀니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
- 시행일 : 2015.7월



‘희귀질환치료제’ 환자 접근성 강화

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(☎ 044-202-2753)

-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**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** 신설합니다.
 -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
 -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‘A7국가 최저 약가’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,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됩니다. 이렇게 보험 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(A7국가 :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위스, 일본)
 -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,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입니다.
 - 그리고,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추도록 하겠습니다.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‘15.3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알림마당)보도자료)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·고시개정안 입법예고

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

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(☎ 044-202-2824)

- 2015.1.1부터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**금연구역**이 면적에 관계없이 **모든 음식점**으로 확대됩니다.
 -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입니다.
 - * '12.12월 150㎡이상(7만개) → '14.1월 100㎡이상(8만개) → '15.1월 모든 음식점(60만개)
 -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**10만원의 과태료**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- 또한 일부 음식점(예: 커피전문점)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**'흡연석'**도 특례기간이 금년 **12월말로 종료**됩니다.
 - 이에 업소 소유자·점유자 및 관리자는 '15.1.1.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, **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**하여야하며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- 이를 위해 **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,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**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, **홍보**하고,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.

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전면금연

- 추진배경 :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
- 주요내용
 - 모든 일반음식점영업소, 휴게음식점영업소, 제과점영업소 내 전면 금연 실시
-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(☎ 044-202-3052)

-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,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, '15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할 계획입니다.
-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,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합니다.
 -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,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*을 반영합니다.

*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,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

〈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 〉

현 행		➔	개 편 후	
선정기준	급여수준(내용)		선정기준	최저보장수준(내용)
최저생계비	최저생계비의 80%수준 현금급여 (현물급여 등 제외)	생 계*	중위소득 28% 수준	중위소득 28% 수준
	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(현물급여)	주 거	중위소득 43% 수준	지역별 기준임대료
	수업료, 교과서대 등 (현물급여)	의 료	중위소득 40% 수준	현행과 동일
		교 육	중위소득 50% 수준	현행과 동일

* 중위30%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

-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**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**하여, 제도의 사각지대를 **완화**합니다.
 - * 부양의무자 소득기준('14년) : 수급자 1인, 부양의무자 4인 가구일 경우 (기존) 290만원(413만원,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) → (개선) 464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다고 판단
 -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(의료비, 장애용구)되는 점을 반영하여, **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·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**할 예정이며,
 - **교육급여**에 대하여는 교육이 기회균등 및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, 교육부 교육비 지원사업과 연계·통합 등을 고려하여 **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**합니다.
- 급여체계 개편시 **지원 대상자가 현재('14.11월) 약 134만명에서 약 210만명으로 약 57% 증가**하고 **지원수준이 강화**되는 한편,
 -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**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**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송파 세모녀법, 국회 본회의 통과

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

- 추진배경 : 급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수준 현실화 및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강화
- 주요내용
 - ① '전부 아니면 전무'방식의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 제고
 - ②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(중위소득)을 반영하여 보장수준 현실화
 - ③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
- 시행일 : 2015.6월 (잠정, 국회 본회의 통과)

■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

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(☎ 044-202-3062)

-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할 예정입니다.
 - 지금까지 '300만원 이하'로 설정되어 있던 금융재산 기준을 '15년 1월 1일부터는 '500만원 이하'로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.
 - 또한, 긴급지원 지원단가를 2.3% 인상할 계획입니다.
 -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 월 108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위기 가구에 보다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 - 아울러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(14.12.9.)함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'15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기준* 또한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 - * 최저생계비의 120~150% 이하 → 185% 이하
- 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 정보> 법령정보> 입법/행정예고>「금융재산기준」일부개정안, 「긴급지원 지원단가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」일부개정안
- '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'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위기가구를 보호하겠습니다.
 - 지금까지는 '6개월 이내'의 실직, 휴·폐업만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였으나, '15년부터는 '12개월 이내'로 경과규정을 완화하겠습니다.
 -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만 보호했지만, 앞으로는 가족구성원이 모두 미성년자, 노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 정보> 법령정보> 입법/행정예고>「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」일부개정안



임신·출산·육아 바우처카드 통합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(☎044-202-3204)

- 내년 4월부터는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(고운맘카드)과 청소년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(맘편한카드) 및 아이행복카드(아이사랑카드+아이즐거움카드)를 하나의 “국민행복카드”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-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,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**매번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.**

임신·출산·육아 바우처카드 통합

- 추진배경 : 원카드 멀티서비스 구현 및 불필요한 신용카드 발급 최소화
- 주요내용
 - ① 기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,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를 추가하여 사용 가능
- 시행일 : 2015년 4월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(☎ 044-202-3224, 3228)

■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‘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’의 지원 대상을 2015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**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% 이하**(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3,321원 이하)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‘15년부터 **소득 65% 이하**(‘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4,553원 이하) 출산 가정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.

- 이를 통해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는 ‘14년보다 2만3천여 명이 늘어난 **8만 8천명이 지원받게** 됩니다.

* 서비스 수혜자 64,656명→88,071명(증 36%), 일자리 2,487개→3,387개(증 36%)

- 이와 함께,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**상대적으로 산후관리 비용부담이 큰 출산가정***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정하여 **예외 지원을 확대**할 계획입니다.

* 예외지원 대상 : 미혼모(‘15.추가), 새터민산모(‘15.추가), 희귀난치질환산모, 장애인산모, 쌍생아·둘째·셋째아 이상 출산산모, 결혼이민산모, 분만취약지산모 등

2015년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

■ 추진배경 : 산모·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■ 주요내용

- ①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현행 ‘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% 이하’에서 ‘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% 이하’ 출산가정으로 확대
- ② 상대적 산후관리 부담 계층에 대한 예외 지원 확대

■ 시행일 : 2015년 2월

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등록 가능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(☎ 044-202-3288, 3289)

-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(이하 ‘국가유공자 등’)에 대하여 2015년 5월부터 장애인 등록이 허용됩니다.
 - 12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3천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 - 국가유공자 등의 장애인 등록 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등급심사를 거치도록 하되,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며,
 -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과 등록 장애인 간의 복지서비스 격차가 해소되어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- 다만,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, 장애수당 등 기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됩니다.

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>보도자료>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

국가유공자 등 장애등록 허용

- 추진배경 : 현행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
- 주요내용
 - ① (등록절차)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상이등급자(9천명)는 등록절차 간소화
 - ② (중복서비스 제한) 보훈서비스와 중복된 서비스는 제한
- 시행일 : 2015년 5월

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☎ 044-202-3341)

-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5년 6월 1일(입법예고 준비 중)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
 - 활동지원급여 시간당 단가도 '14년 대비 3% 인상('14년 8,550원 → '15년 8,810원)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.

2015년도 장애인활동급여 신청자격 확대 사항

- 추진배경 : 중증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강화
- 주요내용
 -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(장애 1급·2급→장애 1급~3급)
- 시행일 : 2015년 6월(잠정, 개정안 입법예고 중)

장애수당 급여인상으로 경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
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(☎ 044-202-3322)

-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장애수당 지급대상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(3~6급) 등록 장애인이며,
 - 기초생활수급자(일반 재가)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현행보다 33.3% 인상(3만원 → 4만원)하여 지급합니다.
- *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현행 유지
- * 기초생활수급자(일반 재가) 및 차상위 계층은 월 3만원,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2만원 지급('14)

2015. 1월 이후 장애수당 급여 인상

- 추진배경 :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인상하여 생활안정 지원
- 주요내용 : 장애수당 인상 3만원 → 4만원(33.3% 인상)
- 시행일 : '15. 1월

■ 여성장애인에게 경제적 경감을 위한 출산비용 대상자 확대

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(☎ 044-202-3347)

-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비용 신청자격을 기존 1~3급에서 장애 등급 6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
 -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 6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
 - 1~6급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·사산한 자 '14년 대비 ('14년 1~3급, 단가 1,000천원 → '15년 1~6급, 단가 1,000천원)하여 지원될 계획입니다.

2015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확대 사항

- 추진배경 :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시 비용 지원 경제적 부담 경감
- 주요내용
 -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자격 확대(장애 1~3급→장애 1급~6급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

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(☎ 044-202-3413)

- 국내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양육수당 지원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2014년에는 아동이 만 14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던 양육수당을 2015년부터는 만 15세가 될 때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.
 -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이며, 앞으로도 지원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국내입양가정의 양육수당 지원범위 확대

- 추진배경 : 국내입양가정에게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
- 주요내용
 - ① (지급대상)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에서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양한 국내 가정
 - ② (신청절차) 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·군·구에 제출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확대
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(☎ 044-202-3457)

- 골절 및 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하여 최대 2개월간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(선정기준)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(부부 모두 만75세이상)의 노인가구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이하(1인기준2,307천원)인자

〈소득 판정기준〉

(단위 : 원)

가구원수	전국가구평균 150%이하		
	소득(월)	건강보험료(월)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
1인	2,307,000	70,377	62,319
2인	4,648,000	141,277	156,072

* '15.4월경 건강보험료 재산정시 건강보험료 변동 예정

- (본인부담금) 무료 ~ 42,000원(월) (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)
 - *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9,800원이며, 이 중 7,425원 이상을 돌보미 임금으로 지급
- (정부지원액) 193,200원 ~ 235,200원



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지원 강화
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 (☎ 044-202-3481, 3463, 3451)

- (독거노인) 안전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돌봄을 강화합니다.
 - '14년에는 약 30만명을 지원하였으나, '15년에는 민·관협력을 강화하여 독거노인 보호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.
 - * 안부확인(20→22만명) 안전확보(8.1→9만명), 친구만들기(4천명→5천명), 사랑잇기(4.6→5.4만명), 노노케어(노인일자리사업)을 통한 확대(3→10만명)
- (학대피해노인)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(27→29개소, '15.7월~), 심리 상담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- (건강취약 노인)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안(眼)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실명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실시합니다.
 - 안검진의 단가를 ('14년)36,250원 → ('15년) 43,000원으로 인상 개인수술비는 ('14년) 2,440안(眼)→('15년)5,000안(眼)으로 확대합니다.
 - 무릎 인공관절 수술자 중 저소득 노인(약 1,900명)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



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

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(☎ 044-202-3475)

- 기존의 **노인일자리** 사업을 '15년부터 **노인 사회활동지원**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입니다.
- 사업규모를 '14년 28만명(재능나눔 3만 별도)에서 '15년 34만명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재능나눔, 지원봉사, 민간 취업·창업 등의 기회를 부여하며,
- 특히 '14년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편성하여 활동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아울러, 현장에서의 어르신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**전담인력**의 인건비를 인상(월 109만원 → 월117만원)하여 **처우개선**과 함께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.

(노인장기요양보험) 안전하고 청결한 복지용구 제공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(☎ 044-202-3496)

- 이동변기, 성인용 보행기 등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의 안전성 및 위생 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여, 복지용구를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.
- 이를 위해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‘복지용구 사업소’는 매 분기마다 장기요양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안전성 및 위생상태를 점검·기록하고,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,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또한 어르신을 모신 가정에서는 복지용구의 기능, 안전성과 위생상태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복지용구 사업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☞ (참고) 노인장기요양보험(www.longtermcare.or.kr)>장기요양기관 검색>복지용구>지역별 복지용구 사업소 검색

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용구 현황

- 복지용구 이용가능 대상 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 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
- 급여품목 현황
 - ① 구입품목 : 이동변기, 목욕의자,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, 간이변기, 욕창예방방석, 지팡이, 자세변환용구 등 9개 품목
 - ② 대여품목 : 수동휠체어, 수동·전동 침대, 욕창예방매트리스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, 배회감지기 등 7개 품목
- 사용가능 금액 : 연간 1인당 16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

친(親)고령 분야 전문가 양성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(☎ 044-202-3496)

- 고령사회 대비 건강노화, 실버산업, 노인복지정책, 고령친화 제품 및 기술의 연구·개발 등 친(親)고령 분야 융복합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.
- 2015년 2학기부터 대학 내 친(親)고령 분야 학위(석·박사)과정 및 산업현장 연계 실무교육 과정을 개설·운영하는 친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2곳을 지정하고, 예산을 지원합니다.
- 동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 받게 되면, 초기 3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까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동 특성화 대학원 지정 신청 관련사항은 내년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.

친(親)고령 분야 특성화 대학원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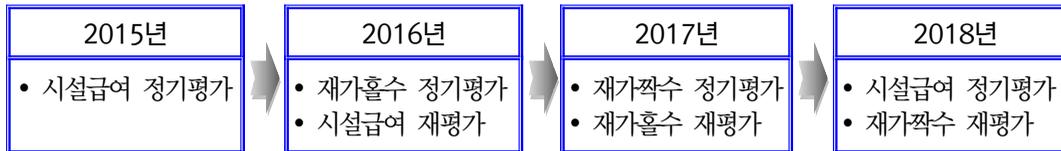
- 주요 지원 내용
 - 장학금, 교수진 운영비, 전문교육과정 운영비,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비용 등
- 지원금액
 - 2개 대학, 한학기당 3억원 내외('15. 2학기부터 운영)
- 교육과정
 - (석·박사 학위과정) 고령화사회대비 노인복지정책 연구·개발, 친고령산업 기술 연구개발, 건강노화 비즈니스 모델 연구개발
 - (비학위과정) 친고령 산업인력에 대한 산업기술 관리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 운영, 건강노화 비즈니스 개발 및 경영 컨설팅센터 설치·운영

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편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(☎ 044-202-3513, 3511)

- 장기요양급여 기관(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)의 체계적이고, 효율적인 평가 운영을 위해 평가주기 등이 변경됩니다.
 - (체계화·합리화) 난이도와 변별력을 강화한 지표를 신설하고, 지표 통·폐합 등을 통해 **지표를 조정** 하는 한편, 급여제공 과정 프로세스를 반영하여 **재배치**
 - (평가주기 변경) 평가 결과 우수기관은 정기 평가 주기를 **2년에서 3년**으로 변경
- 반면, 하위 기관 평가주기는 수시 평가 도입으로 주기가 짧아짐
 - (수시평가) 평가 결과 **최하위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기관**, 신청 기관에 대해 **정기평가를 실시한 다음해에 수시평가를 실시**하여 질 향상 제고

〈참고〉 연도별 평가 현황



- 지표 신설 및 강화) 시설 학대예방 및 안전한 식생활등을 위해 지표 신설 및 배점을 조정·강화

* (신설) 식품위생관리 지표 신설

* (배점 강화) 안전(8→16점)지표, 노인학대예방(1→5점)지표의 점수 강화

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

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(☎044-202-3549)

- 보육료(아이사랑카드)·유아학비(아이즐거운카드) 지원카드가 **아이행복카드** 하나로 발급됩니다.
 - 2015년 1월부터 **학부모들은**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카드(아이사랑카드)와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카드(아이즐거운카드)를 통합한 **새로운 카드인 아이행복카드**를 통해 **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** 있습니다.
 - 또한, 7개의 카드사에서 **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학부모의 카드 선택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이 향상**됩니다.
 - * KB국민카드, 우리카드, 하나카드, NH농협카드, 신한카드, BC카드, 롯데카드
 - 기 발급받은 **보육료 지원카드(아이사랑카드)와 유아학비 지원카드(아이즐거운카드)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카드교체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도 최소화**할 계획입니다.
- ☞ (참고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내년 1월부터 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

【현 행】



【통합 후】



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카드 하나로 통합

- 추진배경 : 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카드 발급 편의성 향상 및 선택권 제고
- 주요내용
 - ① 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으로 어린이집·유치원 어디에서나 하나의 아이행복 카드로 사용 가능
 - ② 7개의 카드사에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게 됨에 따라 부모의 카드사 선택 폭이 넓어지고 발급 편의성 향상
 - * KB국민, 우리, 하나, 신한, NH농협, BC, 롯데
 - ③ 기 발급받은 카드도 교체 없이 계속 사용 가능
- 시행일 : 2015년 1월

기업 기부채납 등을 적극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

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, 보육기반과 (☎ 044-202-3545,3579)

-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.
- 지금까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별도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나
 - 2015년부터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.
- 또한,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내 의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**입주민 자녀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**입니다.

기업 기부채납 등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

- 추진배경 : 기부채납에 대한 혜택 부여로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
- 주요내용
 - 어린이집 설치 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,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에게 입소우선권 부여
- 시행일 : 2015년 1월 1일(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)
 - * (확인경로) 보건복지부 홈페이지>정보>법령정보>현행법령 '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'



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

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(☎ 044-202-3561, 3569)

- 201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2015년에는 23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- 201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98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했지만
- 2015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추진, 서비스 제공 기관수를 2014년대비 2배 이상 확대한 230개소로 확충하여, 취업모 등 맞벌이 가구의 시간제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

- 추진배경 :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
- 시간제보육 서비스 주요내용
 - ① (개요) 종일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, 지정 어린이집 등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,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제공 방식
 - ② (지원 내용)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, 시간당 1,000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(보육료 4,000원 중 3,000원은 정부지원)
- 전업주부 등은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,000원 지원(기본형)
 - ③ (제공기관)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
- 시행일 : 신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'15.3월부터 연차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

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

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(☎ 044-202-3566)

-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**보육료 지원금을 인상**할 계획입니다.
 -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‘부모지원보육료’가 3% 인상됩니다.
 - ‘만0세’의 경우 394천원에서 406천원으로, ‘만1세’의 경우 347천원에서 357천원으로, ‘만2세’의 경우 286천원에서 295천원으로 지원이 확대됩니다.
 - 이와 함께 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‘기본보육료’ 또한 3% 인상할 계획입니다.

〈영유아 보육료 인상안〉

(단위: 천원)

구분		'14년	'15년
만0세반	부모보육료	394	406
	기본보육료	361	372
만1세반	부모보육료	347	357
	기본보육료	174	180
만2세반	부모보육료	286	295
	기본보육료	115	118

영유아 보육료 지원

- 추진배경 : 영아 가구 양육부담 완화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
- 주요내용
 - ① 0-2세 부모지원보육료 3% 인상
 - ② 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3% 인상
- 시행일 : '15년 3월

■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확대 지원

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(☎ 044-202-3564, 3568)

- 어린이집 0~2세반(영아반) 담임교사(15만명)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보육 업무 매진을 위하여 월 수당 형식으로 지급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'14년 월 15만원에서 '15년 월 17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.
- '12년부터 지원된 근무환경개선비는 '12년 5만원에서 '13년 12만원, '14년 1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왔으며, 향후 어린이집 내 교사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3~5세반(유아반) 담임교사 수준(월 30만원)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.
- 한편,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(2.3만명)에 대하여도 월 7만 5천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, 동 처우개선비는 '12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.



구직급여 수급자에 실업크레딧(연금보험료) 지원

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(☎ 044-202-3601)

- '15년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합니다.
-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*의 75%(나머지 25% 본인부담)를 지원하여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입니다.
 - * 실직 전 소득의 절반(최대 70만원)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
- 실업크레딧 지원으로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든든히 하겠습니다.

국민연금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변경 가능

- 추진배경 : 실직하는 경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
- 주요내용
 - 구직급여 수급자에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,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
- 시행일 : 2015년 7월



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

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(☎ 044-202-3633)

-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
 - 현행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월 소득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1/2씩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 - 2015년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.
 -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5만원 이상~140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
- 또한,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확대됩니다.
 - 현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85만원으로, 85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/2를, 85만원 초과자는 월 38,2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 - 2015년부터는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월액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확대하여 91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/2를, 91만원 초과자는 월 40,95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201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(단독)으로 상향 조정

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(☎ 044-202-3628)

-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이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,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합니다.
 - 이는 전년도(2014년도) 선정기준액인 87만원(노인 부부가구 139만 2천원)에 비해 6.9% 상향된 금액입니다.
-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'15.4월부터는 최대 20만 3,600원(잠정)의 기초연금액을 어르신들께 지급할 계획입니다.
 - 다만,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만 1,800원~20만 3,600원*의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.

* 부부 감액 및 소득역전 방지 감액 미반영

기초연금제도 주요 변경 내용

- 추진배경 : 노후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
- 주요내용
 - ('15.1월)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%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,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
 - ('15.4월) 기준연금액을 20만 3,600원(잠정)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초연금액을 최대 20만 3,600원 지급 예정
- 시행일 : 2015년 1월, 4월

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

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(☎ 02-2100-6149)

-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됩니다.
 - 동법의 시행으로 양성평등 추진체계가 강화됩니다. 기존의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,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도 신설됩니다.
 - 중앙행정기관의 여성정책책임관 대신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 새롭게 지정되며,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범위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·도까지로 확대됩니다.
 -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·지역성평등지수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어 공표됩니다.
 - 모성권 뿐만 아니라 부성권까지로 보호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, 여성주간도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어 실시됩니다.
- 또한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시행에 따라 “여성발전”에서 “실질적인 양성평등”으로 변화된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「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」을 수정·보완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.

양성평등기본법 주요 내용

- 추진경과 :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을 전부 개정한 「양성평등기본법」공포(14.5.28)
- 주요 개정내용
 - ① ‘여성정책’ 대신 ‘양성평등’ 정의 규정 신설(제3조제1호)
 - ②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양성평등실태조사 실시(제7조~제10조)
 - ③ 양성평등위원회,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양성평등 추진체계 개편(제11조~제13조)
 - ④ 국가성평등지수 등 양성평등 촉진정책 추진(제14조~제28조)
- 시행일 : 2015년 7월 1일



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프라 및 사업 확대

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☎ 02-2100-6204, 6208

- 육아·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, 직업교육훈련, 인턴십, 구인·구직 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**여성새로일하기센터(이하 '새일센터')**가 확대됩니다.
 - 2015년에는 **신규 10개소를 추가로 지정**하여 더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가까이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 - * ('14) 140개소(410억원) → ('15) 150개소(447억원)
 - 또한, **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은 720개 과정**으로 전년도 보다 90개 과정이 **확대·운영**됩니다.
 - * ('14) 630개 과정, 14,000명(128억원) → ('15) 720개 과정, 15,800여명(162억원)
 - 특히, 기업맞춤형·전문기술과정 훈련 확대, 훈련과정에 지역산업수요 반영 등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- ※ 취업관련 상담☎ : 1544-1199(새일센터 대표전화)

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

- (추진배경)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임신·출산·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
- (사업내용) 임신, 출산,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상담, 동행 면접, 인턴제 운영, 취업 후 사후관리 등 **원스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 제공**
 - 취업상담 및 구인·구직 연계 :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개별·집단상담, 취업정보제공 및 구인처 연계
 - 직업교육훈련 : 경력단절여성의 연령·학력·경력 등 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(15년 720개 과정, 15,800명 예정)
 - 새일여성인턴 :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지원(15년 6,005명)
 - * 1인 총 300만원 한도, 6개월 이내, 월 60만원내 기업체 및 인턴자 지원
 -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: 취업자 및 채용기업에 대하여 취업후 상담·멘토링 등 사후관리 지원
- (기대효과)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여성고용률 제고

『청소년활동안전센터』 신설, 청소년활동 안전 강화

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(☎ 02-2100-6255)

-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양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**청소년 활동 안전을 더욱 강화**할 계획입니다.
 - 청소년 안전 전문기관인 『**청소년활동안전센터**』가 2015년 4월부터 **설치·운영**되어 프로그램 인증심사 및 현장점검, 안전관리 종합 매뉴얼 개발·보급, 안전 교육 등 **안전 관리를 총괄**하게 됩니다.
 - 특히, **안전관련 전담인력***이 배치되어 시설 모니터링, 활동 현장점검 등 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청소년활동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.

* (중앙)청소년활동안전센터 27명, (지방)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각 3명

- 청소년은 신고·인증을 거쳐 **안전이 확인된 다양한 프로그램**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, 수련시설 **종합평가**와 **안전점검 점검결과**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- ☎ (참고) **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(www.youth.go.kr)** : 수련시설 점검 및 평가 결과, 신고 및 인증 프로그램 정보 등 청소년 활동 안전관련 정보 확인 가능

청소년활동안전센터 개요

- 추진배경 : **청소년활동 안전에 대한 예방·교육과 대응을 위한 총괄 기구 설치·운영**
- 주요기능
 -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컨설팅, 현장 확인 등 안전 관리
 - 수련활동 안전 종합 매뉴얼 보급,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
 -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 전문 교육
- 설치·운영일 : 2015년 4월

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』 본격 추진

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(☎ 02-2100-6278)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(‘14.5.28 제정, ’15.5.29시행)에 따라 조기발견-자립지원-사후관리까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.
 - 동 법의 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고,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’를 설치·지정하여 상담, 교육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합니다.
 - 각급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 학교 밖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하여야 합니다.
 - 또한,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·공표하며,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,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는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’를 운영합니다.
- 이와 함께, 학교 밖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’가 전국으로 확대(200개소)되며, 각 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* (‘14년) 54개 → (‘15년) 200개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요

- 추진배경 :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’(‘14.5.28 제정, ’15.5.29 시행)
- 주요내용
 - ① 상담·교육·자립·직업체험 및 취업지원·자립지원(제8조~제11조)
 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‘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’ 설치·지정(제12조)
 - ③ 학교장에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 프로그램 안내 및 지원센터 연계의무 부여(제15조)
- 시행일 : 2015년 5월 29일



‘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’ 연중 상시 운영

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(☎ 02-2100-6302)

-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‘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’이 2015년부터 연중 확대 운영됩니다.
- 드림마을에서는 인터넷,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·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1주부터 5주 과정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 - * 프로그램은 상담(개인, 집단, 가족) 및 수련, 대안활동 등 다양한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서 참가 청소년들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관계 능력 증진, 자존감을 회복하게 됨
- 드림마을에서는 시·도교육청의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학기 중에도 수업일수 인정을 받으면서 참여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, 드림마을 참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(NEIS)에 남지 않습니다.
- 이용대상은 중·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청소년으로,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번없이 1388 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(063-323-228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

- 추진배경 : 인터넷·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에 대한 상시 치유 서비스 제공
- 운영내용
 - 입교대상 : 인터넷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(중·고생)
 - 프로그램 내용 : 개인·집단상담, 가족상담, 수련활동, 대안활동 등 수행
 - 입교절차 : 부모동의와 심리검사, 진단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입교
 - 입교비용 :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식대보조금 10~20만원(차상위 계층 이하는 서류 제출시 무료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청소년증 발급절차 간소화

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(☎ 02-2100-6241)

■ '15년 부터 청소년증 발급이 훨씬 쉬워집니다.

-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청소년증을 2015년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개선내용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■ 신청인	■ 청소년 본인	■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
■ 신청장소	■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	■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

청소년증 개요

■ 발급대상 : 만9~18세 이하 청소년

■ 용 도

- ①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(검정고시, 자격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)
- ②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

■ 할인혜택

- 수송시설 : 버스(고속버스 제외) 지하철 20%, 여객선 10% • 궁·릉 : 50%
- 박물관 : 면제~50% 내외 • 미술관 : 30~50% 내외 • 공원 : 면제~50% 내외
- 공연장(자체기획공연) : 30~50% 내외 • 유원지 : 30~50% 내외
- 영화관 : 500~1,000원 등

※ 할인혜택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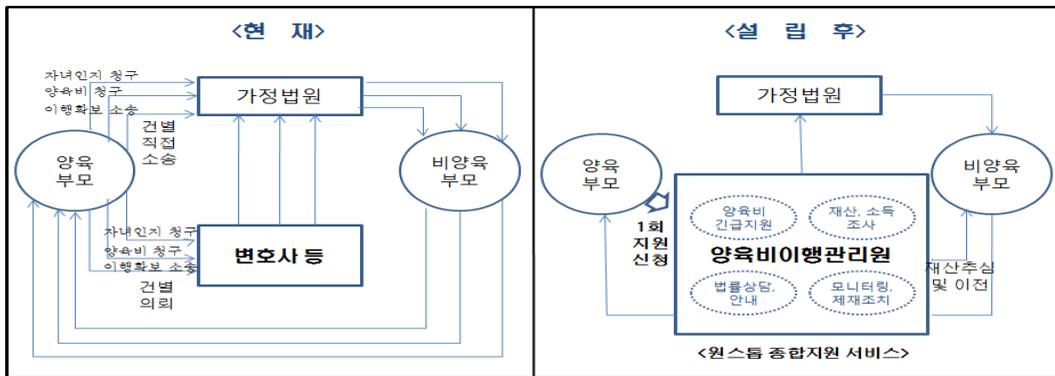
“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” 최초 시행

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(☎ 02-2100-6333~5)

- '15년 4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·미혼 한부모가 비양육부·모(전 배우자 등)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“양육비 이행 원스톱 지원서비스”를 시행합니다.
- 그동안 복잡한 소송 절차, 정신적 스트레스, 시간 부족, 비용 부담 등으로 양육비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.

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83% / 이혼·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경우 4.6% ('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)

- 이에 “양육비이행관리원”을 설립('15.3월말 예정)하여, 1회 신청으로 양육비 상담, 합의·법률·채권추심 지원, 양육비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
☞ (참고) 여성가족부 홈페이지)보도자료)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강화제도 마련

「양육비이행지원제도」 주요 내용

- ◇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행('14.3.24. 제정, '15.3.25. 시행)
- ◇ “양육비이행관리원”을 설치하여 양육부·모가 비양육부·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
- * 양육비채무자 주소 파악, 소득·재산조사, 자녀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, 채권 추심, 양육비관련 교육·홍보 등 업무 수행

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

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(☎ 02-2100-6345)

■ '15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(최저생계비 130%이하) 아동양육비를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지원 합니다.

-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2세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지난 '13년에 월 5만원에서 월7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'15년부터는 월10만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 또한 191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2천여명이 확대됩니다.

* 예산 : (2014년) 516억원 → (2015년) 724억원

* 지원 단가 및 인원 : (2014년) 월 7만원 / 179천명 → (2015년) 월 10만원/191천명

- 향후 '17년까지 아동양육비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생계·육아·가사의 3중고에 시달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부담경감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

■ 지원 대상 : 부 또는 모가 만18세미만의 아동(취학시 만22세미만)을 양육하면서 최저생계비 130%이하인 한부모가구

■ 지원 복지급여

- ① 아동양육비(월10만원/인) : 만 12세미만 아동
- ② 학용품비(연5만원/인) : 중·고등학생 자녀
- ③ 생활보조금(월5만원/인)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
- ④ 추가아동양육비(월5만원/인): 저소득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*의 5세 이하 아동

*24세 이하 미혼 한부모는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에서 추가양육비를 지원함



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 실시

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(☎ 02-2100-6368)

- **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환경조성 사업이 실시됩니다.**
 - 금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던 ‘이중언어환경 조성사업’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.
 - ※ 시범사업 : 6개 센터(경기 파주, 서울 성북, 충남 당진, 전남 함평, 경남 양산), 60여가구
 - **만 0~5세 취학 전 영·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** 이주부모의 모국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,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 습득을 위한 **부모 교육**을 실시하고
 - 이중언어 습득을 위해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및 놀이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**‘부모-자녀 상호작용’**, 가정 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**‘자조모임’** 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됩니다.
- 일상생활에서 이주부모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문화가족자녀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,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중언어·문화 속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주요내용

■ 주요 내용

- ① 사업대상 : 만0~5세 취학 전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
- ② 지원 내용

영역	교육내용
부모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•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
자조모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국의 이주부모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•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·방법 등을 공유
부모-자녀 상호작용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• 동요·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 부모코칭
기초 환경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중언어 환경구축을 위한 가정환경조사, 적절한 교육방법 지도 모니터링



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실화

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(☎ 02-2100-6382/6385)

- 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상담·수사·법률·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이 1월 1일부터 ‘해바라기센터’로 일원화됩니다.
 - 그간 센터는 기능이 매우 유사하나 ‘여성·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’, ‘해바라기 아동센터’, ‘해바라기여성·아동센터’ 등 3가지 유형으로 복잡하게 운영되었습니다.
 - 1월 1일부터는 3개 센터 명칭을 ‘해바라기센터’로 일원화하고, 일부 기능을 재조정*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센터의 이름을 쉽게 기억하고, 이용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.
- * 여성·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대상에 ‘학교폭력 피해자’ 제외, 해바라기아동센터 수사서비스 지원 활성화
- 한편,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'15년 중 해바라기센터 2개소가 신규 설치되고, 성폭력 피해상담소 국비지원은 4개소가 확대됩니다.

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명칭 개선

■ 추진배경 : 성폭력 피해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

■ 주요내용 및 시행일

- ① 통합지원센터 명칭 일원화 : 2015. 1월 1일부터
 - * (종전) 원스톱센터, 해바라기아동센터,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→ (변경) 해바라기센터
- ② 성폭력 피해상담소 국비지원시설 확대(96개소→100개소) : 2015. 1월부터 지원
- ③ 성폭력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확충(34개소→36개소) : '15년 중



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설 신규 지원

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(☎ 02-2100-6385)

-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개소를 '15년에 신규 지원합니다.
-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성폭력 피해자가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주거지원, 상담, 치료 회복프로그램, 직업훈련, 자립자활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로,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 적응을 지원합니다.

※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총 보호시설 지원 확대 (('14년) 27 →('15년) 29개소)

2015년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시설 신규 지원

- 추진배경 : 성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설인프라 확대
- 주요내용
 -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신규지원(2개소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(☎ 02-2100-6395/6396/6398)

- 성매매피해자의 경제적 자립·자활 강화를 위한 **맞춤형 자활 서비스 제공**하고자 **고령 탈성매매 여성 대상 자활지원센터 1개소**를 추가 지정·운영합니다.

*'14년 9개소 → '15년 10개소

- 또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**9월 19일부터 9월 25일**까지 1주간을 「**성매매 추방주간**」으로 지정·운영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.

- 성매매 추방주간 동안 지자체, 경찰청, 여성·아동·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인터넷 TV, 지하철·KTX 모니터, 전광판 등을 통한 전국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.

〈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‘14.3.27 공포, ‘14.9.28 시행)〉

제7조(성매매 추방주간)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.

〈동법 시행령(‘14.9.24 공포, ‘14.9.28 시행)〉

제3조(성매매 추방주간)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를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.

2015년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

- 추진배경 :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
- 주요내용 및 시행일
 - ① 성매매 추방주간 : 2015년 9월 시행
 - ②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확충(자활지원센터 1개소) : 2015년 1/4분기 시행

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등 피해자 지원확대

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(☎ 02-2100-6425)

- 10세 이상 남아(男兒)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하여 **가족보호시설 3개소를 2015년에 전환·설치**하여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.
 - ※ 남아 동반(10세이상) 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설치현황(~'14) : 18개소
 - 부산, 대구, 광주, 강원(원주), 충북(청주), 전북(익산, 군산), 경남(양산, 거제, 창원), 제주(제주시), 전남(목포, 여수), 서울, 대전, 충남(논산, 공주)
- 또한,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**주거 지원시설을 2014년 199호에서 2015년에는 239호까지 확대** 하여 나가겠습니다.
- **여성긴급전화1366** 긴급피난처의 효율적인 운영과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**전담인력 확보(신규18명)**,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치유프로그램 신규지원 (40백만원) 및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확대('14년 438백만원→'15년 631백만원) 등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.

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

- 추진배경 : 가정폭력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확충(18개소→21개소)
 - ② 여성폭력피해 주거지원시설 확충(199호→239호)
 - ③ 1366 여성긴급전화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확보(18명 신규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

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(☎ 02-2100-6442)

- '15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연 2,500회에서 3,500회로 확대됩니다. 전국 10개 권역에서 15개 지역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예방교육이 필요하거나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을 발굴하여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.

※ ('14) 전국 10개 권역 → 전국 15개 시·도

- 지역 및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내실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내 단체,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의 저변을 확산에 도모할 계획이다.
 - 아울러, 다양한 분야의 전문강사 양성,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, 교육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할 것이다.

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

- 추진배경 :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
- 주요내용
 - ①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횟수(2,500회 → 3,500회)
 - ②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 지역 확대(10개 → 15개)
- 시행일 : 2015년 1월

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

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(☎ 02-2100-6429, 6430)

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**생활안정지원금 및 건강치료비 지원금이 인상**됩니다.
 -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01만 2천원에서 월 104만3천원으로 인상되며,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 8천원에서 월 45만 4천원으로 인상됩니다.
 - 그리고 고령으로 인한 치료비 요구 증가에 부응하여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연 359만 4천원에서 연 427만원으로 인상되며, 맞춤형 지원을 위해 5,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.
- 광복 70주년 계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**홍보사업 및 기념사업도**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됩니다.
 - **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**를 위해 피해국가간 공조 및 기록물 목록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,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학생 작품공모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.
 - 더불어 민간단체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국제공조 활동 및 기념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, 소녀이야기 2 등을 제작하여 위안부 문제를 알리는데 널리 활용할 계획입니다.
- 그리고 '14년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운영비가 지원되며, 피해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가 지원됩니다.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충

- 추진배경 :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대한 관심 고조
- 주요내용
 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증액 지원
 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대일 맞춤형 지원(신규)
 - 일본군 '위안부'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
 - 민간단체의 일본군 '위안부' 문제관련 국제공조 활동 및 기념사업 지원
 - 국제학생작품공모전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
- 시행일 : 2015년 1월

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 연장

법무부 상사법무과 (☎ 02-2110-3167)

- 보험자의 보험약관 중요내용의 명시 의무가 설명의무로 강화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 계약자의 계약취소권 행사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.
 - 지금까지 보험자는 보험약관 중요내용을 명시할 의무만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,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.
 - '09년부터 '11년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 보험 관련 피해구제 사례 2,784건 중 상품설명 불충분 199건(7.1%) 등 부실한 계약체결 관련 사례가 22.3%를 차지하였습니다.
 - '15. 3. 12.부터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므로, 그 위반행위 여부가 보다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.
- ☎ (참고)법무부홈페이지<알림마당>보도자료>보험소비자,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



심신박약자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

법무부 상사법무과 (☎ 02-2110-3167)

- '15. 3. 12.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.
 - 그 동안 심신박약자가 자신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의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, 심신박약자가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.
 -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단체보험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심신박약자인 직원은 제외되어, 정신장애인의 소외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.
 - 앞으로는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보조하는 심신박약자도 가족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☎ (참고) 법무부홈페이지(알림마당)보도자료>보험소비자,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



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하게

법무부 상사법무과 ☎ 02-2110-3167)

- 보험계약 체결을 돕는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,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.
 - 보험대리상은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고,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으며, 청약·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통지하거나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보험회사가 내부적으로 보험대리상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더라도 선의인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제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.
 - 한편, 보험설계사는 보험증권을 교부할 수 있고, 보험회사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면서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.
 - 보험모집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, 더불어 보험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☎ (참고) 법무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보험소비자,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



피보험자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 제한

법무부 상사법무과 (☎ 02-2110-3167)

-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이 실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가족에게 대위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여,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실질적인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 -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실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이어야 하고, 생계를 같이 하지 않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☞ (참고) 법무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보험소비자,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



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

법무부 상사법무과 (☎ 02-2110-3167)

■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.

- 보험수익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: 2년 → 3년
-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청구권 : 1년 → 2년

☞ (참고) 법무부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보험소비자,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



단체생명보험의 수익자는 가족으로

법무부 상사법무과 ☎ 02-2110-3167

- **단체생명보험**에서 보험계약자가 **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**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려면 **단체규약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여야** 하고, 그러한 단체규약이 없다면 **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** 받도록 하였습니다.
- 따라서 회사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, 단체협약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하거나 직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☞ (참고) 법무부홈페이지<알림마당>보도자료>보험소비자,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

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 방지

법무부 상사법무과 ☎ 02-2110-3167)

-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‘유병언식 기업재건’을 막기 위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이 '15. 1. 16. 시행됩니다.
- ①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은 후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거나, ②횡령·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,
 -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, 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
- 또한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회사나 관리인,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.

☞ (참고) 법무부 홈페이지(뉴스)보도자료)회생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도산법 2015. 1. 16. 시행 예정

2015년도 회생절차 악용방지 개정 내용

- 추진배경 : 부도덕한 경영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채무를 탕감 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필요
- 주요내용
 - ① 회생계획안의 임의적 배제(이사의 중대한 책임, 인수자와 구 사주의 연관성)
 - ② 회생계획안의 필수적 배제(회사를 상대로 사기·횡령·배임 등 경제범죄)
 - ③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(채무자,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)
 - ④ 형사처벌 조항 신설(자료제출 기피, 허위 자료 제출, 인가결정시 가중처벌)
- 시행일 : 2014년 1월 16일



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 도입

법무부 상사법무과 (☎ 02-2110-3167)

- 중소기업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이 '15년 상반기 시행됩니다.
 -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를 재량화함으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 절차 기간을 약 3개월 단축시키고,
 -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는
 -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①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/3 또는 ②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하여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하고,
 -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하여 평균 2,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
- ☞ (참고) 법무부 홈페이지(뉴스)보도자료 「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」 도입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 2015년 상반기 시행

2015년도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 내용

- 추진배경 :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·채무 관계가 단순함에도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함
- 주요내용
 - ①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의 재량화(회생절차기간 약 3개월 단축)
 - ②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
 - ③ 간이조사위원제도 신설(조사위원 선임비용 약 2,000만원 절약)
- 시행일 : 2015년 3월(잠정, 개정안 `14.12.9. 국회통과)*



기부는 쉽게, 운영은 투명하게, 사용은 내 의지대로

법무부 상사법무과 ☎ 02-2110-3167)

-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「공익신탁법」이 '15. 3. 19.부터 시행됩니다.
 - 공익신탁을 설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, 앞으로는 **인가만** 받으면 되고, 인가요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- 뿐만 아니라 인가 절차도 명확해지고, 각종 서식도 마련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.
 - 공익신탁의 주무관청이 흩어져 있어 공익사업의 내용에 따라 여러 부처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야 하였으나, 앞으로는 **법무부의 인가와 감독**을 받으면 됩니다.
 - 공익신탁의 활동내역이 **인터넷에** 공시되고, **법무부가 감독**을 전담하여, 공익신탁의 운영이 투명해집니다.
 - 공익신탁 **운용소득의 70% 이상을 공익사업에** 사용하도록 하고, 일정 규모의 공익신탁은 **외부감사**를 받도록 하며, **잔여재산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신탁에게** 귀속 되도록 하여 공익신탁을 악용할 수 없게 됩니다.

☞ (참고) 법무부 홈페이지>뉴스>보도자료>기부는 쉽게, 운영은 투명하게, 사용은 내 의지대로

2015년도 시행 공익신탁법 주요 내용

- 추진배경 :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제도 정비
- 주요내용
 - ① 공익신탁 설정 요건의 완화(허가제→인가제)
 - ② 공익신탁 주무관청의 일원화(공익사업별 주무부처→법무부)
 - ③ 공익신탁 인가절차의 구체화, 관련 서식 마련
 - ④ 공익신탁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제도 등 도입
 - ⑤ 공익신탁의 악용방지를 위해 운용소득 사용제한 제도 등 도입
- 시행일 : 2015년 3월 19일



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·면 배정

법무부 법무과 (☎ 02-2110-3170)

- 전국 1,412개 모든 읍·면에서, 주민들이 전화·팩스·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.
 - 대한변호사협회, 법무부, 행정자치부가 2014. 6. 5. 함께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가 확대되어, 전국 1,412개 모든 읍·면에 1,455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.
 -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0%에 해당하는 전국 읍·면 주민들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.
 - 상담건수가 증가하고, 따뜻한 사례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.
 -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상담건수는 714건으로, 미집계된 상담건수가 약 80%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상담건수는 약 3,000여건으로 추정됩니다.
- ☎ (참고) 법무부 홈페이지>뉴스>보도자료> “우리 마을에 ‘변호사’가 생겼습니다.”

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·면 배정

- 추진배경 :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웃같이 친근한 변호사를 연결할 필요성
- 주요내용
 - ①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권유하여 마을변호사 추가 위촉(733명→1,455명)
 - ② 모든 읍·면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하여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
- 시행일 : 2013년 6월 → 2014년 11월 21일 전면 배정

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- 교복은 학교에서, 학부모는 부담 경감! -

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(☎ 044-203-6522)

■ 2015년부터 모든 국·공립학교의 신입생(현재 초6, 중3)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됩니다.

-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,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는 방식인 ‘학교 주관구매 제도’를 통해,
- 신입생은 교복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하고 학교에서 선정한 교복 업체로부터 교복을 공급받게 됩니다.

※ 사립학교의 경우 ‘학교주관 구매’ 실시 여부는 학교별로 차이가 있음

■ 교복 착용 여부와 구매 일정, 착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에 해당 학교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‘교복 물려 입기’(중고) 등의 사유로 ‘학교주관 구매’에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입생 배정 학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사전 신청하여 교복을 구하면 됩니다.

■ 따라서, 학교의 안내 없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☞ (참고) 교육부 홈페이지(알림)공지사항>교복 학교주관 구매 시행 및 ‘교복구매 운영요령(2014년 개정)’ 안내